

부산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0가단3003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로
담당변호사 이정환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현정
변 론 종 결 2022. 7. 22.
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9. 8.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2019. 8. 12. 접수 제374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는 금융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와 C은 2002. 1. 7. 혼인신고를 하였고, 자녀로 E(2002년생)와 F(2005년생)를 두었다.

다. 2010. 5.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C은 같은 해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중소기업은행은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위 근저당을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

라. C은 2019. 8. 8. 보유 중이던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여 원고에게 융자상환손실금 593,039,068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게 되었다. C은 2019. 8. 9. 원고에게 위 채무를 2019. 9. 1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C은 2019.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일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당시 피고와 C의 주요 재산은 아래와 같다.

명의자	적극재산	소극재산
C	이 사건 아파트, 시가 약 360,000,000원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주)G 교환사채 시가 불상(액면가 500,000,000원)	이 사건 채무 593,039,068원
	쏘나타 차량 시가 약 2,880,000원	
피고	H아파트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금융기관 채무 약 58,000,000원

바. 피고와 C은 2019. 8. 13. 부산가정법원 2019호협5018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9. 10. 21.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454037호로 '이 사건 채무액 593,039,0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9. 11. 15. 확정되었다.

아.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에서 2019. 11. 19. 피고와 C은 E와 F의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기로 협의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고, 그 양육비를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와 C은 당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C은 이 사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가장이혼을 하였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은 C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시가 500,000,000원 상당의 (주)G 교환사채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 C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증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약 360,000,000원에서 피고가 인수할 예정인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액 약 16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00,000원(위자료 및 양육비 100,000,000원 포함)을 피고에게 재산분할한 것이고, 이는 과다한 재산분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써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를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2)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거나 과도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1) C은 피고와의 혼인기간 중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피고는 가사와 육아 등으로 그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
- 2) 피고는 C과의 혼인기간이 17년여에 이르고 가사와 육아 외에 혼인기간 중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소득활동도 한 점, 피고와 C이 이혼을 하게 된 주된 귀책사유는 과도하게 주식 등에 투자하여 거액의 손실을 입은 C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고 피고가 두 자녀의 양육비 외에 부부 공동의 채무인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 등을 책임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C과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204,000,000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약 360,000,000원 -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정도를 분할받은 것이 재산분할로서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 3)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을 알게 된 후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C과 협의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석

[별지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경사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지하1층 87.3676㎡

1층 340.0485㎡

2층 420.5702㎡

3층 420.5702㎡

4층 420.5702㎡

5층 417.6862㎡

6층 417.6862㎡

7층 417.6862㎡

8층 417.6862㎡

9층 417.6862㎡

10층 417.6862㎡

11층 417.6862㎡

12층 417.6862㎡

13층 417.6862㎡

14층 417.6862㎡

15층 417.686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3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84.989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 18952㎡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18.952분의 45.3441

